

---

# ESG PRACTICE GUIDEBOOK

---

공급망 인권실사, 어떻게 대비할까  
실무자를 위한 지침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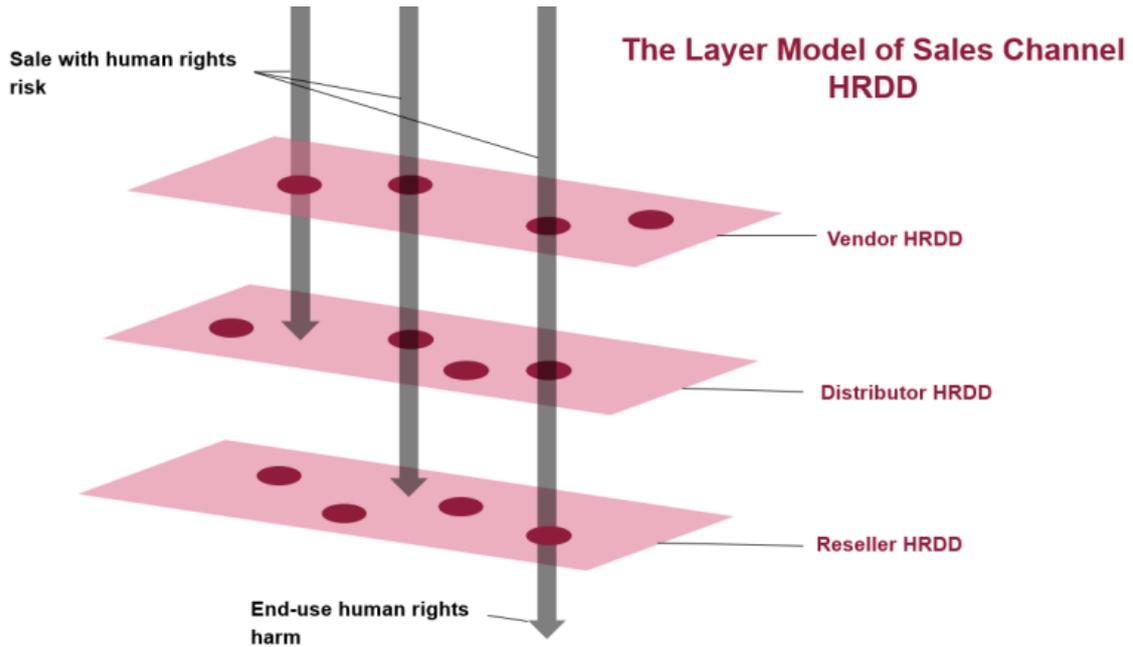
# 글로벌 기업 공급망 실사 Case Study

1. 휴렛패커드
2. 유니레버
3. 코카콜라
4. 네슬레
5. 글렌코어

## 글로벌 기업 공급망 실사 Case Study

분류	기업명	Case	내용	링크
부정적 영향 예방·축소	휴렛패커드	다중 실사를 통한 판매채널 인권실사체계 수립	제조사 - 도매사 - 소매판 매자로 이어지는 다중 실사 체계 모델 제시	<a href="https://www.bsr.org/reports/Sales-Partner-Best-Practice-Brief.pdf">https://www.bsr.org/reports/ Sales Part- ner - Best Practice Brief. pdf</a>
부정적 영향 예방·축소	유니레버	파트너십 정책을 통한 공급망 인권책임 연쇄 효과 도모	파트너십 정책수립 - 협력사 교육 - 감사의 절차를 통해 공급망 인권 책임이 제조사 - 협력사 - 2~3차협력사로 이어지는 것을 도모	<a href="https://www.unilever.com/files/92ui5egz/production/7ee90f-260faed25e11e1c4b-bad207eec205b42d0.pdf">https://www.unilever. com/files/92ui5egz/ production/7ee90f- 260faed25e11e1c4b- bad207eec205b42d0. pdf</a>
부정적 영향 예방·축소	코카콜라	협력사 인권관리 가이드 라인 개발	협력사의 인권실사체계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템플릿, 평가 Tool 제공	<a href="https://www.coca-colacompany.com/policies-and-practices/supplier-guiding-principles">https://www. coca-colacom- pany.com/pol- icies-and-prac- tices/ supplier-guid- ing-principles</a>
부정적 영향 예방·축소	네슬레	해산물 공급망 강제노동 근절 행동계획제시	태국 해산물공급망에서 발생한 강제노동 자진신고 및 재발방지책 수립	<a href="https://www.nestle.com/sites/default/files/asset-library/documents/library/documents/corporate-social-responsibility/nestle-seafood-action-plan-thailand-2015-2016.pdf">https://www.nestle. com/sites/default/ files/asset-library/doc- uments/library/docu- ments/corporate_so- cial_responsibility/ nestle-seafood-ac- tion-plan-thai- land-2015-2016.pdf</a>
부정적 영향 예방·축소	글렌코어	원주민 사회와의 소통을 통한 피해 완화방안제시	원주민사회와의 사전협의를 통한 광산건설 피해 보상안 사례 소개	<a href="https://www.glencore.com.au/dam/jcr:eac15127-ee93-4c50-91d4-88d666e34cf6/glencore-australia-working-with-australian-indigenous-communities-2016.pdf">https://www. glencore. com.au/dam/ jcr:eac15127- ee93-4c50-91d4- 88d666e34cf6/ glencore-australia-work- ing-with-australian-indige- nous-communi- ties-2016.pdf</a>

# 1. 휴렛패커드 - 다중 실사를 통한 판매채널 인권실사체계 수립



(그림) 휴렛 패커드(HP)와 BSR이 제시한 판매채널 다중 실사 모델

[https://www.bsr.org/reports/Sales\\_Partner\\_-\\_Best\\_Practice\\_Brief.pdf](https://www.bsr.org/reports/Sales_Partner_-_Best_Practice_Brief.pdf)

- 전자제품의 경우 물품사용단계에서 인권침해 (해킹, 정부의 대국민감시, 디지털기술 오남용 등)가 자주 발생한다. 하지만 전자산업섹터의 경우 제조사가 직접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를 통해 대부분의 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품 사용자에게 대한 실사를 수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
- 때문에 휴렛패커드와 BSR은 제조사-도매상- 소매판매자로 이어지는 다중 실사를 통해 물품 사용자의 인권 침해위험을 식별하고 이를 방지한다.

## a) 사전지침 및 피드백 수렴채널수립

- 다중 실사를 수행하기 전 제조사 - 도매상 - 소매판매자로 이어지는 판매채널은 인권 지침을 공유하고, 잠재적·실제적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사용자에게 판매거부를 서약하고, 인권 위험 식별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 이를 통해 다운스트림 판매 네트워크 전체에서 인권침해방지에 대한 목적을 공유하고 같은 Agenda 하에서 위험경감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 또한, 판매채널의 각 단계별 피드백 수렴 채널 및 연락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 HP의 경우 파트너 행동강령을 통해 판매사에 대한 윤리적 마케팅, 인권존중서약, 인권실사의무 등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며, 소비자 혹은 판매자가 HP에 직접 피드백을 전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수립했다.

## b) 제조사 인권책임 수행

제조사의 인권실사 책임은 다음과 같다.

- 물품 판매를 통해 발생하는 자사 제품 오남용 및 인권침해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수립
  - 자사 임직원 및 제3판매자 대상 제품 오남용 인권침해 사례교육
  - 판매사 행동강령 및 계약조건에 인권 관련 지침 추가
  - 판매사에 대한 인권감사 수행
  - 제한적 사용 정책 등을 통해 자사 제품의 사용가능목적을 정확히 명시
- 
- HP: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통해 물품 판매 및 사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이슈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사건발생 및 리스크 요소를 모니터링한다.
  - 이에 따라 2021년, 총 41건의 물품 판매거래에 대한 심층 인권위험평가를 수행하였다.
  - 판매사 행동강령을 통해 윤리적 마케팅, 정부사용자 (인권침해가 가장 많이 발생) 판매 지침, 자체인권 실사, 뇌물 및 불법리베이트 금지 조항 등을 요구한다.
  - 전자제품 책임사용가이드, 워크숍, 온라인 세미나 등을 통해 자사 영업사원 및 판매사를 대상으로 마케팅 윤리 및 자사제품 오남용 사례에 대해 교육한다.
  - 특히 HP가 가장 신경쓰고 있는 부분은 AI기술의 오남용이다. 때문에 자사 임직원 및 판매사를 대상으로 AI윤리적 사용지침을 발간하고, 해당 이에 교육을 수행한다.
  - 판매사를 대상으로 현장감사를 수행하며, 영업판매부서에서 직접 인력을 파견해 자사의 지침이 준수되고 있는지 파악한다.
  - 고인권위험국가의 경우, HP의 내부조사팀이 판매사의 거래 내역을 심층 모니터링한다.

### c) 도매사·소매판매자 인권책임수행

도매사·소매판매자의 인권책임은 다음과 같다

- 기업 규모에 맞는 인권지침을 수립해야 하며, 이는 제조사의 지침과 일맥상통해야 한다.
  - 인권 리스크가 높은 서비스 (녹화, 빅데이터 분석 등) 혹은 사용자 (개발도상국 정부기관, 방위 산업체 등)에게 판매시 반드시 사용처에 대한 실사 과정을 동반하고, 판매담당자의 관리 절차 하에서만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구매자의 거버넌스 복잡성, 기밀정보 등으로 인해 실사가 어렵다면 제3자검증기관 혹은 제조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 만약 제조사와 소매판매자와의 직접적인 계약관계없이 도매 - 소매판매자와의 비즈니스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도매사 측은 소매판매자에 대한 인권실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高인권위험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인권침해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 중간 인권 커뮤니케이션 채널로서 하위 판매자 혹은 소비자에게 제품·서비스 사용 윤리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 물품구매자에 대한 정보를 제조사에 전달하여, 제조사 측이 사용자에게 대한 정보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HP: 모든 판매사에 최종사용자 검증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비공식 루트에 의한 판매를 원천차단하고 자사 제품·서비스 사용자에게 대한 정보를 취득한다.
  - 비즈니스·정부 구매자가 물품구매를 원할 경우, 판매사는 사용처에 대한 실사를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 만약 인권침해가 의심되거나 사용처 파악이 어려울 경우, HP의 담당부서에 직접적으로 연락할 수 있다.
  - 판매사에 보이콧리스트를 전달해 인권침해소지가 높은 기관에 대한 제품·서비스 사용을 원천 차단한다.
- \* 판매네트워킹에 대한 인권지침을 수립한 것이 비교적 최근이기에 실제적인 판매사 인권교육이나 실사의무이행 지원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때문에 자사 웹사이트에서는 올해 해당 부분에 집중하여 인권분야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 2. 유니레버 - 파트너십 정책을 통한 공급망 인권책임 연쇄효과 도모

- 국제노동기구(ILO), EU실사법 등은 연쇄효과(Cascade Effect)를 통해 기업의 인권실사체계가 공급망 전체에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1차 협력사가 인권실사체계를 수립하고 2,3차 협력사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공급망 인권실사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유니레버를 통해 이를 위한 수행절차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한다.

### a) 협력사 지침을 통한 인권체계 수립요구

#### Pillar 2 Human Rights

<p><b>4. Freely Agreed Terms of Employment</b> Work is conducted on the basis of freely agreed and documented terms of employment.</p>	<p><b>5. Free from Discrimination</b> All workers are treated equally and with respect and dignity without any form of discrimination.</p>	<p><b>6. Free from Harassment</b> All workers are free from harassment and abuse.</p>
<p><b>7. Work is Voluntary</b> Employment is accepted and work is conducted on a voluntary basis.</p>	<p><b>8. Appropriate Age</b> All workers are of an appropriate age and young workers are protected.</p>	<p><b>9. Fair Wages</b> All workers are paid fair wages.</p>
<p><b>10. Reasonable Working Hours</b> Working hours for all workers are reasonable.</p>	<p><b>11. Freedom of Association</b> All workers are free to exercise their right to form and/or join trade unions and to bargain collectively.</p>	<p><b>12. Health &amp; Safety</b> All workers operate in a safe and healthy work environment that identifies and reduces risks to prevent accidents, injuries and illnesses.</p>
<p><b>13. Access to Grievance Mechanisms &amp; Remedies</b> All workers have access to grievance mechanisms with fair procedures and remedies.</p>	<p><b>14. Land Rights</b> The rights and title to property and land of the individual and local communities are respected.</p>	

(그림) 유니레버 협력사 지침의 요구하는 인권분야 핵심 원칙

- 유니레버를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의 경우, 협력사 행동강령·지침 등을 통해 인권지침 수립을 요구한다.
- 협력사 입장에서 글로벌 기업 인권관리 수준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주로 핵심 원칙이나 분야를 선정한 후 이를 최소요구사항으로 삼는다.
- 유니레버: 총 17개의 핵심 원칙을 설정하였으며 이중 11개가 인권관련 원칙. (자발적 근로, 공정한 임금 및 처우, 차별금지, 고충처리제도 수립)

\* 참조: 유니레버의 협력사 지침

<https://www.unilever.com/files/92ui5egz/production/7ee90f260faed25e11e1c4bbad207eec205b42d0.pdf>

- 협력사는 자사에 해당 원칙을 적용할 뿐만 아니라, 자체적 파트너십·협력사 행동강령 수립을 통해 2-3차 협력사와의 비즈니스 관계에서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

## b) 협력사 교육 및 인권실사체계 수립 지원

- 지침을 통해 요구사항을 전달했다면, 교육 및 지원활동을 통해 협력사의 인권실사체계 수립을 도와야 한다.
- 유니레버는 Responsible Sourcing Program (업스트림 공급망)과 Responsible Partner Program (다운스트림 판매 네트워크)로 분리하여 협력사의 인권 관리 데이터를 수집하고 우수·미흡 사례를 공유한다. (ex. 최근 업스트림 공급망에서 불거진 인권 이슈는 인력소개업체의 채용수수료 문제.)
- 개발도상국의 경우 인력소개업체를 통해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업체들이 과도한 채용 수수료를 요구하여 노동자들이 적절한 수준의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 때문에 유니레버는 지침 및 교육을 통해 이러한 관행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고 인력소개업체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 또한 정기적인 협력사 지침 교육을 통해 협력사들의 인권 분야 이해를 도모한다. 2020년에는 약 2000여 명의 업스트림 협력업체 직원과 12000여명의 판매직원들이 교육을 수강했다.

## c) 협력사 인권지침 이행 모니터링

- 협력사의 인권지침 및 실사 체계 수립이 어느정도 정착되었다면 인권감사를 통해 ‘실행’단계의 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한다.
- 유니레버는 RSP First 프로그램을 통해 자체적 인권실사 기준을 수립하여 협력사에 인권감사를 수행한다.
- 협력사가 수립한 인권지침 및 실사체계가 잘 수행되고 있는지, 2-3차협력업체와의 비즈니스 관계에서 인권실사가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감사결과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인권성과에 대한 개선을 보여야 하며, 중대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유니레버와의 비즈니스관계가 일시·영구적으로 단절될 수 있다.
- 또한 협력사는 Ecovadis 혹은 Smeta 기준을 통해 제3자 감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인권 성과에 대한 개선을 보고할 수 있다.

<https://www.unilever.com/files/92ui5egz/production/7ee90f260faed25e11e1c4bbad207eec205b42d0.pdf>

<https://www.unilever.com/files/cefcd733-4f03-4cc3-b30a-a5bb5242d3c6/unilever-human-rights-progress-report-2021.pdf>

### 3. 코카콜라 - 협력사 인권관리 가이드라인 개발

코카콜라는 협력사의 인권실사체계 수립을 위해 다양한 자료를 발간하여 이를 지원한다.

<https://www.coca-colacompany.com/policies-and-practices/supplier-guiding-principles>

#### a) 주요인권 이슈 가이드

- 토지사용, 외국인노동자 고용, 강제 의료검사 등 주요 인권이슈에 대한 코카콜라의 내부지침 및 협력사 요구사항 그리고 이행을 위한 적용방안을 제시한다. (ex. 외국인 노동자 고용)
- 코카콜라의 내부원칙: 1) 외국인노동자 채용시 소재국가 및 채용대상의 모국어로 된 계약서를 함께 제시하여 계약서를 체결한다. 2) 채용시 노동자측의 수수료 지불을 완전히 금지한다. 3) 여권 등 본인 신분확인 서류의 소유권은 노동자에게 있다.

- 요구사항 및 적용방안:
- 외국인 노동자가 서명하는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근로조건, 제비용 (보험 등), 기타혜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모국어로 명확히 명시되어야 한다.
- 비자 취득, 본국에서의 이동, 계약 갱신 등 고용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노동자에게 수수료를 받아서는 안된다.
- 제3자 기관을 통해 외국인 인력을 수급할 경우, 이에 대한 실사가 요구되며, 실사를 통해 인력수급 과정 및 비용부과체계가 불분명한 경우 비즈니스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
- 협력사가 제공한 시설에 노동자가 거주할 경우, 협력사 측은 신분확인서류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자물쇠, 보관함 등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 Resources Available:

- GSCP Equivalency Tool
- [AIM-PROGRESS Mutual Recognition Framework](#)

#### STEP 3 CHECKLIST – ENSURE THE FOLLOWING IS COMPLETE PRIOR TO NEXT STEPS

- ✓ Supplier uses third party independent audit firm to conduct workplace assessments?
- ✓ Audit firms used have listed accreditations? If not, audit firms have demonstrated competency through use of GSCP or TCCC model?



(그림) 코카콜라 인권실사체계 자가수립가이드는 단계별로 참고자료 및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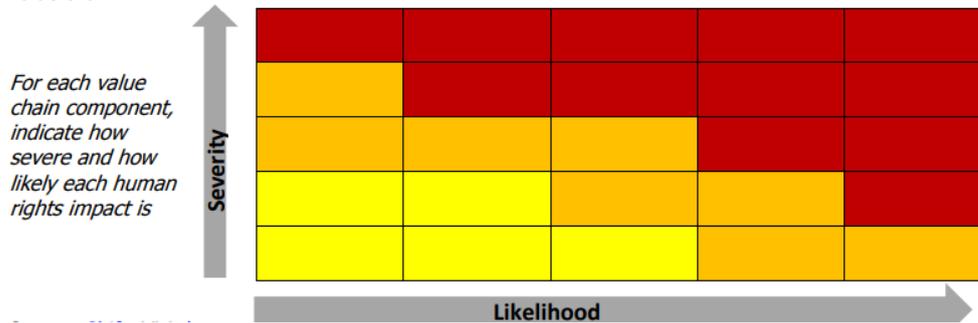
## Value Chain

Describe your company's value chain, potential human rights impacts and any existing due diligence measures:

Value Chain Component					
Potential Human Rights Impacted					
Existing Due Diligence					

## Salient Human Righ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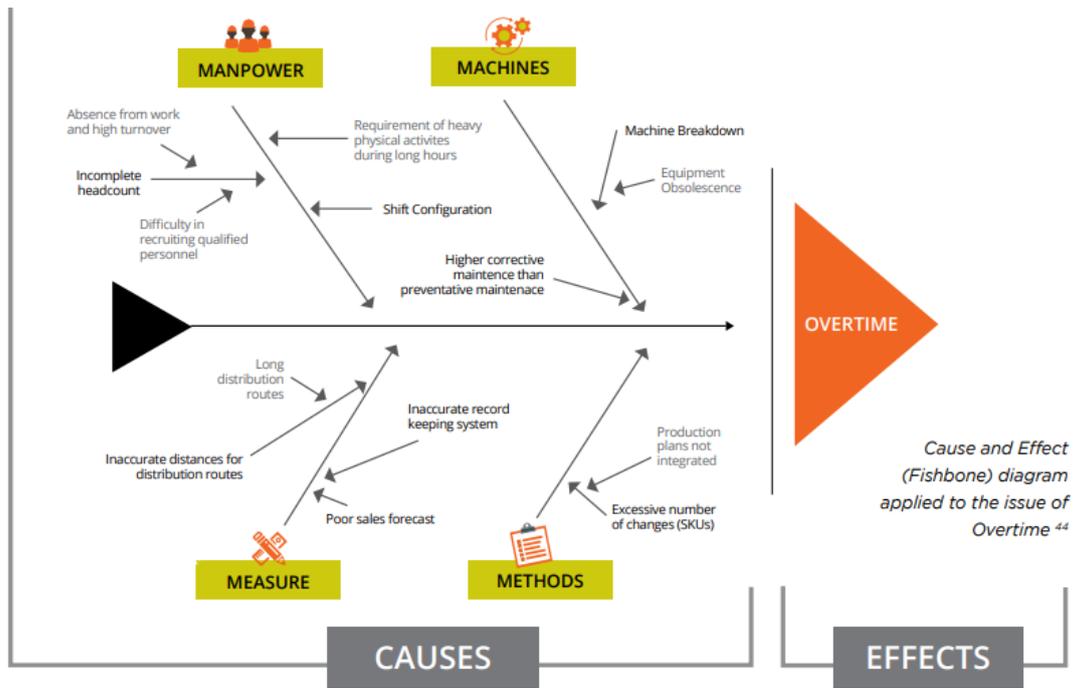
The human rights at risk of the most severe negative impacts (to people) through the company's operations and value chain



(그림) 코카콜라가 협력사에 제공하는 인권실사체계 수립관련 템플릿

### b) 인권실사체계 자가수립가이드 (Pass It Back 프로그램)

- 인권실사체계수립을 위한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 이는 1) 인권 지침 및 가치 수립 2) 인권 실사 및 피해복구체계 수립 3) 제3자 감사 체계 수립 4) 자사 및 2-3차 협력사 감사 범위 설정 5) 인권성과 주기적 보고 6) 공급망 내 인권영향 평가 7) 2-3차협력사 인권실사체계 수립요구로 이루어져있다.
- Pass It Back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해당 프로그램은 협력사의 인권실사체계 수립후 이를 2-3차 협력사에도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 인권실사체계 수립을 위한 다양한 템플릿을 제공한다. 여기에는 인권위험평가 및 중대이슈 선정 Tool, 인권성과 보고서 템플릿 등이 있다.



(그림) 코카콜라가 제시하는 초과근무의 주요 원인

### c) 노동관리 분야 관리 심층가이드라인

- 노동 분야의 경우, 기업의 운영체계와 인권영향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코카콜라는 인권영향 최소화를 위한 근로환경 전반의 운영방식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 여기에는 교대근무제도 최적화, 근무기록관리 방법, 교육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생산성향상 등이 있다.
- 실제 근로환경 개선사례 및 관련 Tool·템플릿·유관기관 등을 소개하여 실질적인 Insight를 제공한다.

#### 4. 네슬레 - 해산물 공급망 강제노동 근절 행동계획 제시



### Responsible Sourcing of Seafood - Thailand Action plan 2015-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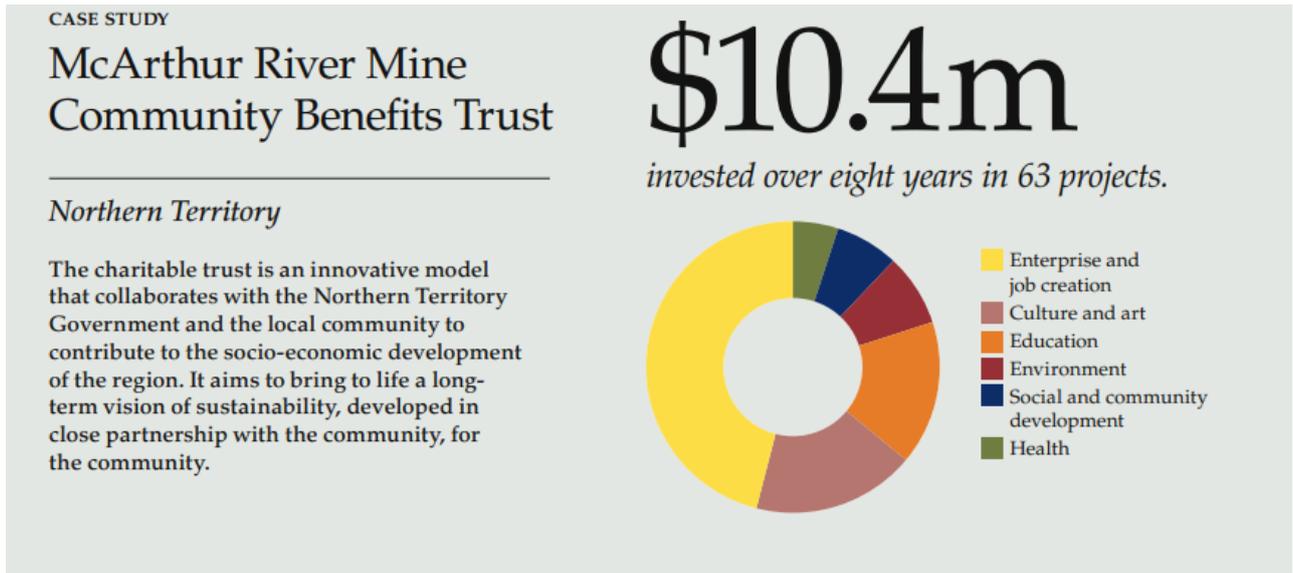
Chapter 4		Action Plan	
<b>Legend:</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ype: Actions are divided into 3 pillars: Enabler, Implementation, Scale Up.</li> <li>Theme: Actions are divided into 3 pillars: Policy &amp; Education, System &amp; Remediation, Stakeholder outreach &amp; collaboration.</li> <li>Leader: Party enabling or supporting execution of Action Plan.</li> <li>Finding Addressed: Refers to Finding identified as part of the VERITE summary. Action is addressing the Findings listed.</li> </ul>			
Type	Objective	Action	
Enabler	Based on the current signature of the Nestlé Supplier Code, incorporate new business requirements into commercial relationship.	Work closely with suppliers to ensur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capacity building programs and business requirements that address human rights and labour standards and demonstrate compliance on an ongoing bas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t a minimum the supplier shall run a traceability system enabling the identification of all potential origins (farms, mills, back to fishing vessels) linked with seafood and other ingredients used as part of product recipes.</li> <li>Additionally that the supplier shall operate a seafood responsible sourcing program to ensure that origins identified are continuously assessed and assisted in meeting business requirements detailed in the Nestlé Responsible Sourcing Guideline. Industry wide verification method and certification schemes can be recognized as equivalent to a company owned responsible sourcing program.</li> </ul>	1
Theme			
System & Remediation			
Leader			
Nestlé			
Finding Addressed			
Timeline	January 31 <sup>st</sup> 2016		

(그림) 네슬레의 태국 해산물 공급망 강제노동 근절 행동계획 중 일부

[https://www.nestle.com/sites/default/files/asset-library/documents/library/documents/corporate\\_social\\_responsibility/nestle-seafood-action-plan-thailand-2015-2016.pdf](https://www.nestle.com/sites/default/files/asset-library/documents/library/documents/corporate_social_responsibility/nestle-seafood-action-plan-thailand-2015-2016.pdf)

- 지난 2015년 네슬레는 내부 공급망 인권감사를 통해 태국의 해산물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 이에 해당 내용을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행동계획을 수립했다.
- 먼저 공급망 추적을 위한 인증요구를 강화했다. 여기에는 물품의 원산지, 선박의 등록정보, 어업 종사자의 신분 및 고용계약서 등이 포함된다.
- 특히, 선박 등록정보와 실제 어획량을 대조하여 공급망 내 누락된 어선이 없는지 모니터링한다.
- 협력사 가이드라인을 통해 노동자 채용 프로세스 및 문서공개, 원산지 증명 등에 대한 공급망 추적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 태국 해산물 협회 및 타업체와 협력하여 선주, 선장, 어부들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수립했다. 교육을 수료한 이에게는 인증이 부여되며, 교육내용 우수 실행자 (ex.어선 안전장비 설치)에게는 재정을 지원한다.
- 인권단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해외 노동자 긴급 대응 팀을 수립했다. 이들은 현지 NGO와의 네트워킹을 통해 현장 인권평가를 수행하며, 상황 발생시 네슬레를 대신하여 즉각적으로 대응조치를 할 권한을 부여받는다.
- 어선 노동환경에 대한 KPI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감사 체계를 수립했다. 매 분기마다 제3자 인증기관이 어선 노동자 인터뷰, 노동 관련 문서 분석을 통해 감사를 수행하며, 매 달 임의의 어선을 선정하여 감사 내용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한다.

## 5. 글렌코어 - 원주민 사회와의 소통을 통한 피해 완화방안제시



(그림) 글렌코어가 설립한 맥아더 리버 광산 지역사회발전신탁

<https://www.glencore.com.au/dam/jcr:eac15127-ee93-4c50-91d4-88d666e34cf6/glencore-australia-working-with-australian-indigenous-communities-2016.pdf>

- 원주민 지역 내에서의 건설 및 인프라 개발사업을 수행할 시, 유엔의 원주민 권리 선언에 따라 “자유 의지에 따른 사전인지동의(Free, Prior, Informed Consent)” 절차를 거쳐야 한다.
- 글렌 코어는 원주민 사회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광산 건설 시 발생하는 권리 침해의 보상안을 제시했다.
- 보상안은 피해수준 및 원주민 사회의 요구에 기반하며 지역민 고용, 장학프로그램, 지역사회발전기금 등이 제시되었다.

### a) 지역민 고용



(그림) 글렌코어의 원주민 직업교육을 수료한 인원

- 원주민 사회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보상안 중 하나. 광산 건설로 인한 농작지, 재배지 파괴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기 때문에, 해당 시설에서의 고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잦다.
- 글렌코어는 원주민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광산업 종사에 필요한 역량을 교육하고 이들을 직접 채용한다.
- 실제 지역민 고용을 요구한 Mount Isa광산의 직원 98%(약 4000명은) 현지 주민으로 구성되어있다.
- 호주 Myuma 지역에서는 130만달러(16억 원) 규모로 매년 48명의 원주민에게 직업교육을 실시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12주의 개념교육과 12주의 현장실습으로 구성되며, 교육을 성공적으로 수료한 이들은 채용기회가 주어진다.

#### b) 장학 프로그램

- 원주민 사회의 경우 거주지와 교육시설이 너무 멀거나, 농작지·재배지 소멸로 인해 청소년들의 진로가 불투명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육지원에 대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
- 글렌코어는 2009년부터 원주민 청소년 장학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이들의 명문 기숙사 학교 입학에 지원한다. 학비 외에도 생활비 및 자택방문 비행기 티켓 등을 지원한다.

#### c) 지역발전기금

- 주로 인프라 건설로 인한 토지 사용 혹은 피해가 클 시에 요구하는 피해 보상안. 일정금액의 기금을 설정한 후, 지역사회에서 필요하는 사업에 이를 활용하는 방식.
- 일레로 마운틴 리버 광산의 경우 지역발전 기금으로 약 1000만 호주달러(약 87억 원)이 투입되어 고용 창출, 교육,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 63개의 사업이 수행되었다.

#### d) 생태계 복구·관리

- 시설 건설로 인한 환경영향의 관리 혹은 피해 복구를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나무심기, 습지 복구 등)

\* 유엔의 원주민 권리 선언문은 원주민의 자연환경 이용 권리를 ‘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 글렌코어는 약 1000만 호주달러(87억 원)를 투입하여 지역 해양 경찰단(Sea Rangers)를 지원하여 이들의 해양생물 보존 및 습지관리에 필요한 선박을 지원하고 청소년 해양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한다.